

#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체제 규정

□ 제정 : 2016. 3. 9.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의 교육목표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 향상도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능력성취도란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의 교과목 수업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학생별, 학과별, 직무별, 대학전체에 대한 직무능력성취도 측정 지표이다.
2. 직무능력향상도란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성과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지표로서 졸업예정자의 직무능력성취도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제3조(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① NCS지원센터는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계획 수립부터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NCS지원센터 또는 학과(전공)는 평가지표(또는 기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4조(직무능력성취도 관리위원회)** ①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성취도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NCS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도구 및 지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결과의 심의·활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5-0-16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체제 규정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절차)**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분석, 평가결과 공람·활용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6조(평가운영)**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는 학생별, 학과별, 직무별, 대학 전체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각 평가의 제출 자료는 각 학과 및 NCS지원센터에서 보관·관리한다.

**제7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과 하위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전공능력평가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에서 성취도를 평가한다.
3. 기초학습능력평가는 국어영역, 수리영역, 사고영역, 영어영역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4. 현장실무능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직무능력성취도 산출)** 직업기초능력과 전공능력에 대한 수업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1. 개인별 직무능력성취도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각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들의 개인별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2. 학과별 직무능력성취도는 학과에서 도출한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과목들의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3. 직무별 직무능력성취도는 각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들의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4. 대학 전체 직무능력성취도는 대학 전체의 각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들의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